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049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예정 기일 :

담당재판부 : 제51민사부

법원주사 김경화

직통 전화 : 02)3415-3571(결정), 530-1706(해
제) 팩 스 :

e-mail :

재판부 이메일 주소는 문의사항을 연락하기 위한 연락처이므로 재판부 이메일 주소로 전자
문서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제출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진행과 관련된 정보(송달과 확정내역 포함)는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나의사건검색'란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등경매사건은 대한민국법원 경매정보홈페이지(<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사건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반송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06594

수신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삼성빌딩)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이창하, 이창재

A1 135 09 16
물서물 서울강남

2096816-594877
(민사신청과 제51민사부)
2022-071-20499-506

06157



결정사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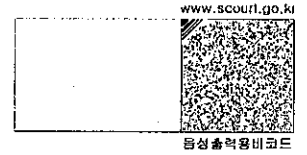
V2021 0939
0946
2429

22101127

채무자1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www.scourt.go.kr

등소송기록비코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2카합2049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 권 자

1. 유한회사 해암

광주 서구 무진대로 927(광천동)

대표이사 박경준, 박수혜

2. 주식회사 비케이씨

광주 남구 독립로 149, 4층(월산동)

대표이사 박수혜

채권자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밋

담당변호사 박장수, 정현수

채 무 자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삼정빌딩)

등기부상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공동대표이사 이창재, 김영진

주 문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유한회사 해암을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2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비케이씨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13 내지 18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 유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201524997호, 유한회사 해암 외 1)을 제출 받고,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201525686호, 주식회사 비케이씨 외 1)을 제출받고 담보로 금 1,300,000,000원을 공탁(2022. 4. 13. 서울중앙지법공탁관, 2022년 금 제6561호, 유한회사 해암)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22. 4. 14.

재판장

판사

전보성



판사

서수정



판사

김두홍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www.scou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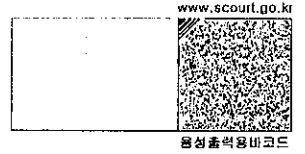
윤심총력용바코드

- ※ 1. 이 가처분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입니다.
- 2. 채무자는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처분이의나 취소신청을 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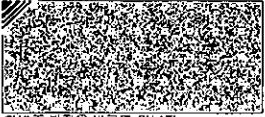
음성출력용바코드

별지 목록

2022카합20499

1.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42-1
대 1604m²
2.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42-7
대 1950m²
3.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44-9
대 1169m²
4.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44-11
전 837m²
5.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44-13
전 39m²
6.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44-20
대 151m²
7.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56-1
답 861m²
8.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56-12
대 10m²
9.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56-13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음성출력용바코드

대 25m²

10.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56-16

대 524m²

11.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56-17

도로 16m²

12.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52-15

대 104m²

13.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56-4

도로 220m²

14.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57

주차장 138m²

15.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57-1

주차장 138m²

16.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5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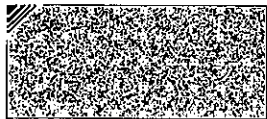
대 153m²

17.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57-7

대 132m²

18.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57-8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대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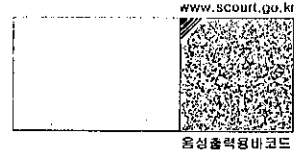


음성출력용바코드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음성출력용 바코드

정본입니다.

2022.04.23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김경화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보전소송절차 안내 (전자)

1. 전자소송 안내

전자소송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가정과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사건 및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이 제출하거나 법원에서 작성한 재판관계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중인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등록 및 인증절차

-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검색 창에서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을 입력하거나 주소창에 <http://ecfs.scourt.go.kr>을 입력합니다.

- 사용자등록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모든 서비스는 사용자등록 후 이용 가능하며, 사용자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행정청 또는 소송수행자의 경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전자소송 이용방법

-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사용자등록을 하신 후,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 사건등록’ 메뉴를 선택하거나, 홈페이지 화면의 ‘전자소송사건등록’을 선택합니다.
- 전자소송사건등록 화면에서 전자소송 진행동의를 체크하고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는 경우’를 선택하여, 아래의 법원, 사건번호, 소송관계인 유형(당사자,참가인,대리인,감정인,전문심리위원,조정위원)과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 법원 :	서울중앙지법	◦ 사건번호 :	2022카합20499
◦ 전자소송인증번호 :	7385618001	◦ 사용자명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타인에게 위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유출될 경우, 타인이 전자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타인에게 유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사건번호와 전자소송인증번호가 확인되면 전자소송사건이 정상 등록되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전자문서의 제출, 전자송달, 전자납부, 전자적 사건기록열람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자소송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나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이로 문서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소송 진행 중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 받지 않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전자소송사건등록화면에서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를 선택하여 법원, 사건번호, 소송관계인 유형을 입력하고 등록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의 대리인 기본정보입력 화면에서 대리인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버튼을 누르면 전자소송사건이 등록됩니다. 대리인 기본정보 입력 시 전자소송홈페이지상의 대리인 회원(변호사, 법무법인, 소송수행자)이 아닌 개인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을 위임한 당사자에게 부여된 전자소송인증번호 입력이 포함됩니다.



(3) 전자적 제출

채무자는 사용자등록을 한 다음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소송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전자적으로 제출한 가압류사건과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사건에 대하여 채무자는 가압류(가처분) 이의·취소, 제소명령, 해방공탁에 의한 집행취소(가압류의 경우) 등의 신청 사건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이로 제출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사건에 대해서는 제1회 기일 다음날까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전자소송동의를 하거나 그 이후에 재판장이 전환명령을 내린 때에 사건 및 소송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의 진행 절차

보전처분이란 「민사집행법」 제4편에 규정된 가압류와 가처분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의 절차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확정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의 손해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보전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본안소송과는 별도의 독립한 절차에 의하여 잠정적인 처분을 하고 그 집행을 통하여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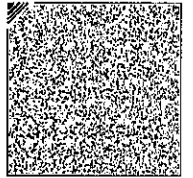
- (1) 보전처분 가운데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예컨대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의 경우에는 변론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는데(「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301조), 변론을 경유할 것인가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 (2) 실무상은 보전처분의 신속성과 밀행성의 요구 때문에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소명자료만을 기초로 보전처분을 발령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3) 채무자는 위와 같은 보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에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1) 채무자는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에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을 거쳐 다시 보전처분신청의 당부를 심리 판단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 이의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제출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에는 10,000원(전자제출 9,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인당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3) 「이의신청서」 양식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들어오시면 내려받기(download) 할 수 있습니다.

4.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신청

- (1) 채무자는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하여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처분을 새로운 재판에 의하여 실효시켜 줄 것을 원칙적으로 보전처분을 명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01조)
 - ② 보전처분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제301조)
 - ③ 채무자가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압류에만 해당,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
 - ④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제301조)
 - ⑤ 가처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민사집행법 제307조)
- (2) 취소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제출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취소신청서에는 10,000원(전자제출 9,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인당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3) 『취소신청서』 양식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들어오시면 내려받기(download) 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의 유의사항

- (1) 준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 등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면에는 일과시간 중 통화가 되는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등 연락처를 적어야 하고, 소송진행 중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곧바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일과시간 중 주소지에서 소송서류를 송달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을 송달장소로 지정할 수 있고 그곳에서 당사자를 대신하여 송달물을 수령할 사람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피신청인)가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제출하거나 법원에서 작성한 재판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받게 됩니다.
- (2) 신청서나 준비서면은 원본 외에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예: 상대방이 2명이면 원본 1통, 부본 2통), 서증은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예: 상대방이 2명이면 사본 3통). 다만, 상대방이 전자송달 대상이면 상대방은 이를 전자소송홈페이지 > 송달문서확인함에서 출력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을 위한 부본을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3)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신청목적의 가액이 1억 이하인 사건에서는, ①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 ②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미리 법원에 당사자 본인 이름으로 작성된 『소송대리 위임장』을 첨부하여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와 대리인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양식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들어오시면 내려받기(download) 할 수 있습니다.
- (4) 기일에는 지정된 시각을 엄격하게 지켜 출석하여야 하고, 만약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기일변경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법원은 당사자 본인이 법관 앞에서 사건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재판기일에는 되도록 당사자 본인이 함께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6)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우체국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였더라도 민사소송법 제185조에 따라 법원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